
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매뉴얼(공급업체)

(' 19. 9월 기준)

1. [공급업체]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

※ 공급업체는 급여유효기간 갱신 만료일 이후에 추가유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갱신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화면설명 : 공급업체가 급여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단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음

○ 경로 : 공급업체로그인/복지용구신청/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(nprk121m01)

1. 신규등록 화면 이동
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 nprk121m01

복지용구신청 [인쇄] [정보] [별첨] [초기화] [삭제] [저장] [닫기]

■ 공급업체

공급업체: [] * 대표자명: []
 연락처: [] 이메일: []
 주소: []
 사업자등록번호: []

■ 신청제품

상태	NO	첨부파일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 잔여기간	신청일자	급여유효기간	심
☐	1	CAP07.JPG	자세변환용구	M	M	적용	2019.07.27~2019.08.26	6일	2019.08.14	2016.04.01~2019.10.25	승
☐	2	CAP04.JPG	자세변환용구	M	M	적용	2019.07.22~2019.08.21	1일	2019.08.14	2016.04.01~2019.10.20	보

[+행추가] [-행삭제]

공단전송

2. '행추가' 클릭
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 nprk121m01

복지용구신청 [인쇄] [정보] [별첨] [초기화] [삭제] [저장] [닫기]

■ 공급업체

공급업체: [] * 대표자명: []
 연락처: [] 이메일: []
 주소: []
 사업자등록번호: []

■ 신청제품

상태	NO	첨부파일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 잔여기간	신청일자	급여유효기간	심
☐	1	CAP07.JPG	자세변환용구	M	M	적용	2019.07.27~2019.08.26	6일	2019.08.14	2016.04.01~2019.10.25	승
☐	2	CAP04.JPG	자세변환용구	M	M	적용	2019.07.22~2019.08.21	1일	2019.08.14	2016.04.01~2019.10.20	보

[+행추가] [-행삭제]

공단전송

3. '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제품조회' 팝업 화면이 뜨면 '조회' 클릭
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제품조회 [nprk121p01]

[선택] [닫기]

* 복지용구품목: 전체 * 제품코드: [] * 제품명: []

* 급여유효기간 만료일: ☐ 2019-08-20 ~ 2019-08-20 [일기]

[조회]

■ 제품 목록

NO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급여유효기간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 잔여기간	신청상태

조회결과 - 건

○ ‘신청상태’ 에 따른 상태

- ‘(빈칸)’ :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대상이나 갱신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(‘미작성’)
- ‘신청기간아님’ : 현재일 기준으로 해당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대상이 아닌 상태
- ‘보완필요’ : 갱신신청기간 중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을 등록하여 공단 전송을 하였으나, 공단 확인결과 첨부서류의 미비 등의 사유로 공급업체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

※ ‘보완필요’ 사유에 대한 상세내역은 담당직원에게 문의

- 만료(바코드정지) : 급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‘바코드 출력제한’ 이 자동 적용,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‘만료(바코드정지)’ 로 표시

·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‘바코드출력제한’ 이 적용된 제품

· 공단 심사결과 ‘승인불가’ 판정으로 급여유효기간 만료 이후 바코드출력제한이 예정된 제품

※ ‘바코드 출력제한’ 제품은 급여바코드 출력이 제한됨으로써, 해당 제품이 더 이상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음을 의미함

4. 신청상태가 ‘(빈칸,미작성값)’ 제품을 더블클릭하거나 ‘선택’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 선택

※ ‘갱신접수잔여기간’ 이 1일~30일인 값만 신청(입력)이 가능하며, 신청이 가능한 제품은 잔여기간 값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

※ 갱신신청접수잔여기간이 30일 이내인 제품만 갱신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■ 신청제품

상태	NO	첨부파일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잔여기간	신청일자	급여유효기간
☐	1		지팡이			적용	2019.09.01~2019.10.01	26일	2019.09.05	2016.04.01~2019.11.30

※ 신청상태가 ‘빈칸,미작성값’, ‘임시저장’, ‘보완필요’인 경우에만 공급업체에서 신청내역을 작성·수정할 수 있음.

※ ‘급여유효기간’은 가장 최근에 갱신된 급여유효기간 값이 표시되며 공단의 심사결과 ‘승인’ 처리되면 3년 연장된 급여유효기간 값이 표시

예시) 현재날짜 : 2019. 9.30,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급여유효기간이 ‘2019.7.1 ~ 2022.6.30’인 제품이 급여유효기간 갱신심사결과 ‘승인’으로 처리될 경우, 화면에 보여지는 급여유효기간 값은 ‘2022.7.1 ~ 2025.6.30’이며, 해당값으로 ‘갱신접수기간’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표시
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제품조회[nprk121p01]

· 복지용구품목: 전체 · 제품코드: · 제품명: [조회]

· 급여유효기간 만료일: 2019-09-02 ~ 2019-09-02

■ 제품 목록

☐	NO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급여유효기간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잔여기간	신청상태
☐	2	이동변기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
☐	3	이동변기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
☐	4	목욕의자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만료(바코드정지)
☐	5	이동변기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
☐	6	이동변기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
☐	7	이동변기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
☐	8	이동변기			적용	20160801~20191031	20190802~20190901	기간만료	
☐	9	목욕의자			적용	20160901~20191130	20190901~20191001	29일	신청접수
☐	10	경사로			적용	20170701~20200630	20200401~20200501	242일	신청기간아님

- ‘공단전송’ 을 하지 않은 ‘임시저장’ 상태이거나 공단의 심사결과 ‘보완필요’ 로 판정된 경우 ‘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 및 심사결과 조회(nprk120m01)’ 화면에서 해당 제품을 더블클릭하여 재작성 가능

※ 경로 : 공급업체로그인/복지용구신청/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 및 심사결과 조회(nprk120m01)

○ ‘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 및 심사결과 조회’ 화면에서 재작성할 제품을 더블클릭하면

○ ‘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(nprk121m01)’ 화면으로 이동되어 재작성가능

5. 신청제품 목록에 선택한 제품이 나오면, 우측 상단에 있는 ‘저장’ 버튼을 클릭하여 임시저장

○ ‘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(nprk121m01)’ 화면에서 ‘저장’버튼을 클릭하면

○ ‘임시저장’ 팝업이 나오고 ‘확인’을 클릭하면 ‘임시저장’ 완료

6. 임시저장이 완료되면, ‘📎’ 아이콘을 클릭하여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첨부파일 추가

○ ‘📎’ 아이콘을 클릭

○ 첨부파일 팝업이 뜨면, ‘+파일추가’ 버튼을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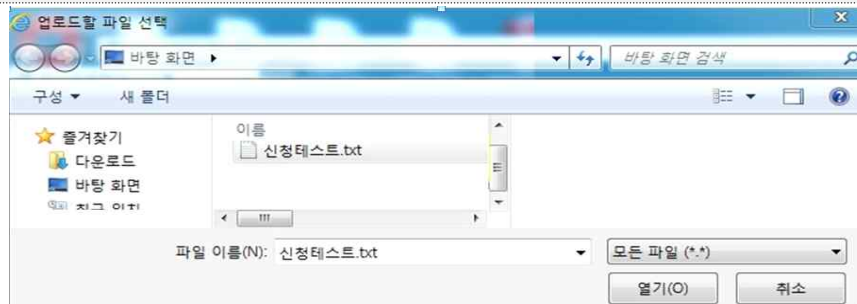
첨부파일 업로드[]

□ 파일 첨부 저장 닫기

+파일추가 -파일삭제

상태	NO	파일명	파일용량	파일받기

○ 첨부파일이 있는 경로로 들어가 첨부파일 더블클릭 또는 ‘열기’ 버튼 클릭



○ ‘저장’ 버튼 클릭

첨부파일 업로드[]

□ 파일 첨부 저장 닫기

+파일추가 -파일삭제

상태	NO	파일명	파일용량	파일받기
1	1	신청테스트.txt	0KB	다운로드

7. 공단 전송으로 신청 완료

○ ‘공단전송’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

복지용구 금여유효기간 갱신신청등록 npk121m01 복지용구신청 초기화 삭제 저장 닫기

□ 공급업체

• 공급업체 연락처 * 대표지명 이메일

주소

사업자등록번호

□ 신청제품

상태	NO	첨부파일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 전매기간	신청일자	금여유효기간	심사결과	사유
☐	1	신청테스트.txt	@ 미끄럼 방지용품	F9						2016.04.01~2019.10.25	임시저장	

+파일추가 -파일삭제

공단전송

○ 팝업창이 뜨면 ‘확인’ 버튼 클릭하여 전송

? 금여유효기간 갱신 신청내역을 공단으로 전송 합니다.
계속 하시겠습니까?

확인 취소

8.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결과 값이 '임시저장' 에서 '신청접수' 로 변경됨을 확인 ... 신청완료

○ 신청상태가 '임시저장', '보완필요' 상태가 아니면 공급업체는 신청내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
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등록 nprk121m01 복지용구신청 초기화 삭제 저장 닫기

공급업체

공급업체: 대표자명:

연락처: 이메일:

주소:

사업자등록번호:

신청재품 ←항추가 →항삭제

상태	NO	첨부파일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제품상태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잔여기간	신청일자	급여유효기간	심사결과	사유
☐	1	신청테스트.txt	미끄럼 방지용품	FS						2016.04.01~2019.10.25	신청접수	

2. [공급업체]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·심사결과 조회

○ 화면설명 : 공급업체가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한 내역 및 공단의 심사결과를 조회하고, 제품별 갱신접수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상태 ‘임시저장’, ‘보완필요’의 신청내역을 불러와 해당 제품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재작성할 수 있음

○ 경로 : 공급업체로그인/복지용구신청/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 및 심사결과 조회(nprk120m01)

1. ‘조회’ 버튼 클릭

○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 및 심사결과 조회 nprk120m01

복지용구신청

*제품코드 클릭시 급여유효기간 갱신내역이 팝업으로 조회됩니다.

* 복지용구품목 전체 * 제품코드 * 급여유효기간 전체 [조회]

* 갱신신청접수잔여기간이 30일 이내인 제품만 갱신신청 접수 가능합니다.

신청결과 '승인불가' 인 경우, 급여유효기간 만료 이후 추가유통이 불가하며('바코드출력제한'), 추후 급여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NO	제품정보			제품상태	갱신접수기간	갱신접수잔여기간	급여유효기간			신청결과	사유
	품목명	제품코드	제품명				시작일	종료일	남은 유효기간		

○ 복지용구 품목, 제품코드, 급여유효기간 항목에 조건을 두어 조회 가능

- ‘급여유효기간’ 항목

- ① ‘전체’ : 급여유효기간이 ‘유효’ + ‘만료’ 인 모든 신청제품내역을 표시
- ② ‘유효’ : 급여유효기간이 현재일자 기준으로 유효한 제품내역만 표시
- ③ ‘만료(바코드정지)’ : 급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‘바코드 출력제한’ 이 자동 적용,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‘만료(바코드정지)’ 로 표시

-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‘바코드출력제한’ 이 적용된 제품
- 공단 심사결과 ‘승인불가’ 판정으로 급여유효기간 만료 이후 바코드출력제한이 예정된 제품

※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은 만료일 이후부터 ‘바코드출력제한’이 적용되어 공급업체에서는 추가유통이 불가함

· 신청결과 값에 따른 상태

- ① 임시저장 : 공급업체가 신규 신청을 등록한 후 ‘공단전송’ 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회화면에서 더블클릭하여 작성한 신청제품을 불러와 작성·수정가능
- ② 신청접수 : 공급업체가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한 후 ‘공단전송’ 을 눌러 공단에 송부한 경우로, 공급업체에서 수정 불가
- ③ 보완필요 : 갱신기간 중 서류미비 등에 사유로 공단의 심사결과 ‘보완필요’ 로 처리된 경우, 공급업체는 해당제품을 조회화면에서 더블클릭으로 가져와 재작성하여 공단 전송 가능
- ④ 승인불가 : 서류미비, 미작성 등의 사유로 공단의 심사결과 ‘승인불가’ 로 처리된 경우, 공급업체는 더 이상 해당제품의 갱신신청이 불가하며, 급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바코드출력제한으로 추가 유통 불가
- ⑤ 승인 : 첨부서류가 충족되어 공단의 심사결과 ‘승인’ 으로 처리된 경우, 공급업체는 더 이상 해당제품의 갱신신청이 불가하며, 해당 건에 대해 공단은 임의대로 ‘삭제’ 할 수 없음. ‘승인’ 처리된 경우 조회화면에서는 기존 급여유효기간에서 갱신기간 3년이 반영되어 표시